

한국과 호주의 규제관리시스템 비교분석과 시사점*

이 혜 영**

본 연구는 규제관리시스템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정책, 제도, 관리수단, 과정을 중심으로 호주와 한국의 규제관리시스템을 13개 세부 항목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일몰제 운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화 등 핵심 제도의 구비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규제의 개념 범위, 기관 설계 방식, 수단 간 연계 구조, 이해관계자 협의 수준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규제의 개념 측면에서 호주는 실질적 영향 기준의 광의적 개념을 채택하여 정책 제안 전반을 규율하는 반면, 한국은 법령에 근거한 협의적 개념에 머물러 있어 규제영향 분석의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 과정 측면에서 호주의 경우 비례성 원칙에 기반한 2단계 평가와 다양한 협의 유형의 제도화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단 측면에서 호주는 PIA·PIR·일몰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규제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반면, 한국은 제도 간 연계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향후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일몰제, 사후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협의 및 RIA 적용 비례성 원칙 면에서 보다 정교화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핵심용어: 규제관리시스템, 규제영향분석, OIA, 규제관리 수단, 규제혁신

* 이 논문은 2023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hylee@kw.ac.kr).

접수일: 2026.06.05. / 심사일: 2026.06.08. / 게재확정일: 2026.06.29.

I. 서론

규제관리시스템(regulatory management system)의 품질은 국가 경쟁력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OECD는 규제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규제의 내용보다 규제관리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우선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OECD, 2006), 규제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규제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OECD, 2009).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의 규제관리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모범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OECD(2021) 평가에 의하면, 호주는 규제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평가 등 주요 지표에서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1986년 규제영향분석을 최초 도입한 이후 40여 년에 걸쳐 이를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왔으며 제도의 실질적 착근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OECD, 2021b, 이현정 편, 2024, 최유성 외, 2013).

이러한 호주의 규제관리시스템은 2020년대 들어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2022년 알바니스 정부 출범 이후 규제합리화국(OBPR)이 영향분석국(Office of Impact Analysis, OIA)으로 개칭되고, 기존의 규제영향진술서(RIS)가 정책영향분석(Policy Impact Analysis, PIA)으로 대체되었다. 규제개혁 부서가 총리내각실에서 재정부로 이관되고, 규제 스튜어드십(Regulatory Stewardship) 모델을 도입하여 규제기관 스스로 지속적 개선 책임을 지는 분산적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PM&C, 2021; 2023a). 이와 같은 최근의 제도적 변화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규제관리의 철학과 방식 전반에 관한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의 규제관리시스템 역시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한국은 1997년 행정규제기

본법을 제정하여 규제관리체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일몰제 등 주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실제 OECD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국무조정실, 2024). 최근 한국은 현재 규제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2026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환하고,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규제관리 거버넌스의 전면적 재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의 개편이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함께 규제개혁의 전문성 토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이처럼 양국이 모두 규제관리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두 나라의 규제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규제관리시스템 개선 및 재설계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양국 모두 OECD 회원국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규제관리체제와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운용하고 OECD 권고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어서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편, 한국이 대륙법 전통에 기반한 법령 중심의 협의적 규제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호주는 영미법 전통에서 발전한 실질적 영향 중심의 광의적 정책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규제관리시스템의 보편적 원리와 맥락적 특수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으며(Przeworski & Teune, 1970; 김신·최진식, 2013), 이는 향후 제도 개선에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규제관리시스템에 관한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미국·영국·독일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김신·최진식, 2013; 이영범·최무현, 2006). 기존 호주 관련 연구들은 호주의 규제관리시스템을 단독으로 소개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최유성 외, 2013; 이현정 편, 2024), 한국과의 유사점·차이점을 분석들에 따라 심층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호주의 규제합리화국(OBPR)이 영향분석국(OIA)으로 전환되고 규제 스튜어드십 모델이 도입된 바, 이러한 최신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관리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규제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정책(policy), 제도(institution), 관리수단(tool), 과정(process)의 네 가지 측

면에서 양국 간 규제관리시스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규제관리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호주의 경우 2020년대 이후의 최근 변화를 반영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적실성 있는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관리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규제관리시스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규제관리시스템의 개념과 구성요소

1. 규제관리시스템의 개념과 의의

규제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소비자 보호 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동시에 기업과 국민에게 비용을 발생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 따라서 현대 국가에서는 개별 규제의 신설이나 폐지뿐만 아니라 규제 품질(regulatory quality)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규제관리시스템(Regulatory Management System, RMS)이다. OECD는 규제관리시스템을 규제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정책, 규제기관, 규제절차, 규제품질관리 수단 등을 체계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관리체제로 정의한다(OECD, 2009).¹⁾ 규제관리시스템은 단순히 개별 규제를 심사하는 제도가 아니라 규제의 설계, 집행, 평가,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규제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은 규제개혁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통합된 구조적 틀(integrated framework) 속에서 규제와 관련된 모든 제도 및 절차를 개혁하여 총합적인 규제효과(aggregate regulatory effects)를 관리하고 규제관리 레짐(regulatory regime)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OECD, 2006; 김신·최진식, 2013: 58 재인용). OECD 규제개혁 프로그램은 규제의 효과성과 효율성

1) OECD(2009)에 의하면, 규제관리시스템이란 '규제기관을 규제하여 규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기제'를 의미한다(김신·최진식, 2013: 57 재인용).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관리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우선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²⁾

규제관리시스템은 규제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OECD는 효과적인 규제관리시스템이 규제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과 기업의 규제 순응도를 제고한다고 본다(OECD, 2021).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플랫폼 경제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스튜어드십(regulatory stewardship), 규제기관 성과관리, 규제 샌드박스 등 새로운 규제관리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요컨대 규제관리시스템은 규제의 신설과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 규제정책 전반의 품질을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이며, 국가 경쟁력과 행정역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규제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규제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Jacobzone et al.(2007)은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규제기관(regulatory institutions), 규제 절차(regulatory process), 규제품질관리수단(regulatory quality tools)의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으며, OECD(2009)는 이를 토대로 규제관리시스템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Gill(2014)은 정책주기(policy cycle), 관리기관(institutions), 지원수단(tools)의 관점에서 규제관리시스템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OECD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의 최근 제도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규제관리시스템을 정책(policy), 제도·기관(institution), 수단(tool), 과정(process)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2) 김성준(2015)은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개별 규제의 개선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관리시스템의 진화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골프장 규제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초기 규제완화가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으나, 이후 정부가 규제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 정책(policy)

규제관리시스템의 정책 차원은 시스템 전체의 방향성과 철학을 규정하는 상위 수준의 선택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정책'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개별 규제 정책이 아니라, 규제관리 그 자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메타적 정책(meta-policy)을 의미한다(Jacobs, 2007). 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규제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규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규제관리시스템이 적용되는 대상의 폭이 결정된다. 둘째, 규제영향분석의 적용 범위이다. 규제영향분석을 신설·강화 규제에만 적용할 것인지, 기존 규제에도 적용할 것인지,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도 포함할 것인지는 규제관리시스템의 실질적 포괄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OECD(2009)는 규제영향분석이 신설 규제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기존 규제의 사후검토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규제관리의 기본 접근방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규제관리를 규제 총량의 양적 감축에 초점을 둘 것인지, 규제 품질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둘 것인지는 규제개혁의 성과 측정 방식과 기관의 인센티브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민호 외, 2021).

2) 제도·기관(institution)

제도·기관 차원은 규제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과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감독기관, 부처 내 자체 규제심사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규제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OECD는 규제감독기관이 규제영향분석의 품질관리, 규제개혁 전략 수립, 규제성과 모니터링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신·최진식(2013) 역시 규제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규제추진기구의 통합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Kohlmeier(1969)는 정부규제 실패의 원천이 규제기관의 구조와 절차 문제에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후 Breyer(1982)는 규제기관의 구조적 변화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책임성 확보와 성과 향상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주장하였다.

제도 차원에서 규제감독기관의 위상과 독립성은 중요한 이슈이다.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기관이 행정부 내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그 기관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권위와 직결될 수 있다(이영범·최무현, 2006; 김신·최진

식, 2013). 동시에 감독기관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술적 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규제영향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ANAO, 2025).

3) 관리수단(Tool)

규제관리시스템의 수단 차원은 규제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구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규제영향분석(RIA), 사후규제영향평가(PIR), 규제일몰제,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샌드박스 등이 있다. OECD는 규제영향분석을 가장 핵심적인 규제 품질관리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설 규제뿐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한 사후 평가와 성과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Kerwin(1994)은 규제관리체계 내에서 규제수단들이 상호작용하며 통합되어 규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고 설명하였으며, OECD(2007)는 규제영향분석과 행정 간소화를 대표적인 규제관리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규제영향분석은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사전에 분석하여 합리적 규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이다(김신·최진식, 2013). 분석 항목의 구성이나 분석서 품질의 등급화 및 공개 여부 등에 따라 수단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PM&C, 2023a).

이와 함께 규제일몰제와 사후규제영향평가는 규제의 전주기적 관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몰제는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가 자동적으로 정리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의원입법 포함 여부, 재입법 시 규제영향분석과의 연계 구조, 면제 기준의 엄격성 등에 따라 수단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사후규제영향평가는 시행된 규제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규제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서(양용현·이현정 외, 2023), 제도 운영에 있어서 독립적 법적 근거의 유무, 의무화 대상 기준, 전담 평가기관의 역할, 사전 RIA 및 일몰제와의 유기적 연계 구조가 중요하다. 이 외에도 비용총량제, 규제샌드박스, 규제기관 자체관리수단 등이 규제관리시스템의 중요한 수단 요소가 된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사전), 일몰제, 사후영향평가가 규제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어떻게 연계되어 작동하는지가 수단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4) 과정(Process)

과정 차원은 규제의 형성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와 참여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입법예고,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 공개, 규제심사 절차 등이 포함된다. OECD는 규제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에는 규제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규제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심사 과정과 구조는 중요한데, 규제심사가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긴급 예외의 범위와 사후 보완 의무, 심사 결과의 구속력 여부 등이 중요하다(OIA User Guide, 2023). 이해관계자 협의의 제도화 면에서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 의무화 범위와 시점, 협의 유형의 다양성과 적용 기준의 명확성, 협의에서 제시된 대안이 정책 분석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메커니즘 등이 중요하다(OIA, 2023;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실질적 품질은 적용되는 분석방법론의 수준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비용편익분석(CBA)의 방법론 표준화 수준, 위험도 분석·분배적 영향 분석·경쟁 영향 분석 등 보완적 분석방법의 체계화 등이 중요하다(OIA, 2023b; 2023c; KDI 규제연구실, 2023). 이러한 분석방법의 다양성과 체계화는 규제영향분석이 형식적 제출 요건의 이행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투명성과 공개 측면에서 규제영향분석서의 공표 시점, 감독기관의 품질 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 규제정보 공개 플랫폼의 접근성, 그리고 연간 규제관리 성과의 공개 보고 체계는 규제관리시스템에서 중요하다. 공개된 영향분석서와 품질 평가 결과는 규제 입안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로도 기능한다(ANAO, 2025).

3. 본 연구의 접근방법 및 분석의 초점

1) 본 연구의 접근방법

본 연구는 OECD의 규제관리시스템 분석틀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호주와 한국의 규제관리시스템을 정책(policy), 제도·기관(institution), 수단(tool), 과정(process)의 네 가지 차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규제관리시스템을 단순히 규제영향

분석이나 규제개혁기구와 같은 개별 제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규제관리시스템의 비교 대상으로 호주는 선정하여 고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모두 OECD 회원국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한국) 및 정부 내각 지침(호주)에 의거한 공식적 규제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규제영향분석제도와 규제일몰제를 운용하며, OECD 규제정책 권고를 공통의 참조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규제관리시스템이 아주 잘된 나라로 언급된다. 이러한 공통적인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두 체계 간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제도의 개선점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호주의 규제관리시스템은 OECD가 국제 모범사례로 인정한 체계이며(OECD, 2021b), 최근 정책영향분석(PIA) 체계로의 전환, 규제 스튜어드십 모델 도입, OIA를 통한 독립적 품질 관리 강화 등 2020년대 이후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³⁾ 한국 역시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2026), 사후규제영향평가 법제화(2026)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환점에 놓여 있다. 이 시점에서 양국을 비교하는 것은 한국의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실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OECD iREG 평가에서 한국도 규제영향분석의 제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본 연구는 제도 간 실질적 착근 방식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호주와의 비교는 여전히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호주의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규제품질지수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⁴⁾ 호주 제도와 운영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호주의 규제관리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제도 비교분석 접근방법을 채택한다. 제도비교분석은 둘 이상의 국가나 체계에서 유사하거나 상이한 제도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대조함으로써, 단일 사례 연구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제도의 보편적 원리와 맥락적 특수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Mahoney & Thelen, 2010).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최대유사체계분석(MSSD: Most Similar Systems Design)에

3) 특히 본 연구는 2020년대 이후 호주 규제관리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한다. 호주는 OIA 설립, PIA 체계 도입, 규제 스튜어드십 접근, 규제기관 성과가이드(Regulator Performance Guide) 운영 등을 통해 기존의 규제관리체계를 재설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의 사전심사 중심 체계에서 규제의 전 생애주기(life-cycle)를 관리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4) https://www.theglobaleconomy.com/rankings/wb_regulatory_quality/

가까운 전략을 취하고자 한다. 양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식적 규제관리체계를 갖추고 OECD 권고를 공통의 참조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환경이 유사하다. 이 유사한 조건 아래에서 규제의 개념 정의, 제도 설계 방식, 수단 간 연계 구조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발견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공통의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영역에서 비교분석은 제도 설계의 대안적 경로를 탐색하는 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OECD, 2009; 김신·최진식, 2013).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관리시스템에 관한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미국이나 영국에 관한 비교분석이 주를 이루었다(김신·최진식, 2013; 이영범·최무현, 2006), 규제관리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호주를 한국과 체계적으로 비교한 학술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호주 관련 연구들의 경우 호주의 규제관리시스템을 단독으로 소개하거나 여러 국가 사례 중 하나로 개괄적으로 다루는 데 그쳐(최유성 외, 2013; 이현정 편, 2024), 한국과의 제도적 유사점·차이점을 분석틀에 따라 심층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22년 이후 호주의 규제합리화국(OBPR)이 영향분석국(OIA)으로 전환되고, 규제 스튜어드십 모델이 도입되며 큰 변화를 겪었는데 최신 제도 변화를 동시에 반영한 비교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관리시스템의 4개 구성요소별로 세부 분석 항목을 설정하고 양국의 최신 제도 변화를 포괄하는 체계적 비교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규제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도 비교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분석적 비교(descriptive-analytical comparison)를 기본 방법으로 삼고자 한다(Page, 1995). 이는 각국 제도의 현황을 충실히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설정된 분석 범주와 세부 항목에 따라 양국 사례를 체계적으로 대조하고, 유사점·차이점을 통해 각국의 특징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로 2차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호주의 경우 총리내각실(PM&C)과 재정부(DoF)의 공식 지침·보고서, OIA의 각종 가이드, 호주 감사원(ANAO) 감사 보고서, OECD 문서 등을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및 시행령, 연도별 규제개혁백서, KDI 규제연구실 자료, 규제정보포털 공개 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2) 규제관리시스템 비교를 위한 개념적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규제관리시스템의 정책(Policy), 제도(Institution), 관리수단(Tool), 과정(Process)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2절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분석의 초점을 세분화하고자 한다.

정책 측면에서는 규제관리시스템 전체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상위 수준의 정책 선택을 의미한다. 어떤 정부 행위를 '규제'로 볼 것인지, 어떤 정책 제안에 영향분석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규제개혁을 어떤 철학으로 추진할 것인지가 이 차원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제도 측면에서는 규제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위상, 권한, 역할 분담을 다루고자 한다. 누가 규제 품질을 관리하고, 해당 기관이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리수단 면에서는 규제관리시스템이 지속적 규제 관리 및 규제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동원하는 구체적 정책 수단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수단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호 간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과정 차원은 규제가 형성되고 심사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절차적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한다. 투명하고 참여적인 규제과정은 규제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최성락·이혜영, 2012).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하여 규제관리시스템 비교분석을 위한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규제관리시스템 비교분석을 위한 분석틀

구성요소	분석요소	분석의 주안점
정책 (policy)	규제의 개념과 범위	- 법령형식기준인가 실질적 영향 기준인가 - 다양한 정부 개입 형태 포괄하는가 -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규제영향분석의 적용 범위	- 신설 강화 규제 관리 중심인가 - 의원입법을 포함하는가 - 경미한 기계적 변경의 면제 기준 설정방식
	규제관리의 기본 접근방식	- 규제 총량의 양적 통제와 규제품질의 질적 관리 - 중앙집중적인가 자율적 접근인가 - 사전 사후 연계생애주기적 접근방식
기관	규제심사기구의	- 규제심사 규제개혁 기구의 위상과 역할

(Institution)	위상과 독립성	- 기관 간 역할과 조정
	신설규제 심사기구	- 의사결정의 범위 - 심사결과 공개방식과 품질평가
	기존규제 개혁기관	- 신설규제 심사기구와의 관계 - 항시조직인가 임시조직인가
관리수단 (tool)	규제영향분석	- 분석항목의 구성 - 품질등급화 및 공개여부 - 분석수준 차등화 (비례성 원칙) - 의사결정에서 분석서의 역할
	규제일몰제	- 적용대상 (의원입법 포괄여부) - 효력상실형 중심인가 재검토형 중심인가 -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
	사후규제영향평가	- 적용대상과 의무화 범위 - 규제영향분석 및 일몰제와의 관계
	기타 수단 간 연계	- 규제비용관리제,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 규제기관 성과관리 가이드 등 규제관리 수단
과정 (process)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절차	- 규제심사 단계와 절차 - 제도화 수준과 예외 운영 - 심사결과의 활용 - 투명성과 공개
	이해관계자 협의	- 협의 시점과 의무화 정도 - 협의 유형의 다양성
	기타 분석과정	- 비용편익분석의 표준화 - 다양한 분석방법의 활용 수준

III. 한국과 호주의 규제관리시스템 비교분석

1. 정책 (policy) 측면

1) 호주

호주에서 관리대상이 되는 규제란 '순응(compliance)이 기대되는, 정부가 승인하는 모든 규칙(any rule endorsed by government where there is an expectation of compliance)'으로 정의된다(PM&C, 2023a: 5). 이에 따라 규제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된다. 즉, 순응이 기대되면서 개인·기업·지역사회 조직에 '경미하지 않은' 행동 변화 또는 영향을 초래하는 '모든 정책 제안 또는 정부 행위'가 규제영향분석의 적용 대상이 된다(PM&C, 2023a: 5). 이는 규제를 '법령'이 아닌 '정책'으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정부 행위의 실질적 영향을 기준으로 관리 대상을 결정한다.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범위를 보면, 넓은 규제 개념에 기초하여, 연방정부 부처뿐 아니라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 97개의 규제기관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PM&C, 2023a). 연간 1,500~1,800건의 정책 제안이 영향분석국(OIA)의 검토를 거치며, 이 중 40~50건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가 완료·공표된다(OECD, 2021b: 1-2). '경미한(minor)' 또는 '기계적(machinery)' 변경에는 영향분석이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OIA가 판단한다.

2020년대 이후 호주 규제개혁의 핵심 접근방식은 규제 스튜어드십(Regulatory Stewardship) 모델이다. 이는 과거의 중앙집중적·처방적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를 설계하는 정책 기관과 규제 당국이 규제가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도록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접근방식이다(Australian Government, 2022). 이 모델은 규제시스템을 정기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규제에 대한 생애주기(life cycle)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기존의 경직된 체크박스 방식보다 유연한 지침과 정기적 검토를 선호하며, 규제기관의 성과·역량·문화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M&C, 2021).⁵⁾

5) 호주는 전통적으로 총리 또는 장관이 기대진술서(SOE)를 통해 개별 규제기관에 규제 운용 방향을 전달하고, 개별 기관이 목적진술서(SOI)를 작성해 왔다. 리스크 기반 규제, 결과 기반 규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기대는 이미 2015년 규제기관 성과프레임워크(RPF)에서 제도화된 바 있으며, 규제순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2) 한국

한국에서 '행정규제'(이하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된다.⁶⁾ 한국의 규제 개념은 주로 '법령'에 근거한 제약으로 접근하는 법령 중심의 상대적으로 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및 범위 면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적용 대상은 신설·강화 규제로 한정된다. 제개혁의 접근방식 측면에서 역대 정부는 규제 총량 감축, 규제 일몰제, 비용 관리제 등 양적 관리에 치중해 왔다. 최근에는 규제영향분석의 실질화,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등 규제의 질적 관리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이동하고 있다. 2026년 4월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강조하면서 선제적·체계적 규제정비, 환경변화에 유연한 규제 운용, 성과 지향적 규제개선,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현장 소통 기반의 규제개선을 5대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메가특 구 도입, 규제샌드박스 확대, 부처별 규제평가 재설계 등 전면적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국무조정실, 2026).

3) 분석요소별 유사점과 차이점

(1) 규제의 개념

양국 모두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인식 하에 규제관리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의 공통성이 존재한다.

두 나라의 규제 개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의 규제 개념은 국가 행위의 형식과 수단(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방점을 두는 침익적 국가행위 중심 개념이다. 「행정 규제기본법」 제2조는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정하며, 시행령은 그 범위를 허가·인가·시정명령·행정처분 등 공식적 법령상 의무 부과 행위로 구

관한 반응적 규제에 관한 연구는 호주 규제 연구의 오랜 핵심 주제였다.

6) 동법 시행령은 규제의 구체적 범위를 ①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처분, ②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조사·단속 등 행정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체화한다. 즉 어떤 정부 행위가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적 형식이다.

반면 호주의 규제 개념은 실질적 영향 중심이다. 호주 영향분석 가이드(PM&C, 2023a)는 규제를 '순응이 기대되는, 정부가 승인하는 모든 규칙'으로 정의하며, 영향분석 적용 대상은 '순응이 기대되면서 개인·기업·지역사회에 경미하지 않은 행동 변화 또는 영향을 초래하는 모든 정책 제안 또는 정부 행위'이다. 판단 기준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의 크기이다. 호주의 규제 개념은 '순응에 대한 기대와 그로 인한 행동 변화'를 중심에 두는 기능적·관계적 개념으로 넛지(nudge) 등 행동경제학적 개입처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제약 없이도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정부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개념 차이의 실제적 함의는 적용 범위의 차이로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지도, 권고, 가이드라인, 보조금 조건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관리 체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이러한 정부 행위도 정책 대상자에게 실질적 순응이 기대되고 그 영향이 경미하지 않으면 영향분석 대상이 된다. 또한 한국에서는 규제기관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 주로 집중되지만, 호주에서는 공공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 97개 규제기관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PM&C, 2023a).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각국의 법 전통과 행정 문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독일 등 대륙법 계열 국가는 법적 근거를 규제 정당성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영미법 전통의 호주는 규제를 정책의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법치주의적 예측 가능성을 호주에서는 실질적 정책 영향 포괄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양국 모두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정책 결정에 활용한다는 제도적 원칙을 공유한다. 분석 항목으로 비용·편익 분석, 이해관계자 영향, 규제 대안 검토,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는 점도 유사하다. 또한 양국 모두 경미하거나 기계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분석 의무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은 신설·강화 규제에만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한다.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도래 시 재분석이 이루어지지만, 이는 독립적인 사후영향평가 제도가 아니라 일몰제와 연계된 부분적 적용이다. 의원입법으로 신

설·강화되는 규제는 행정부의 규제영향분석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호주의 경우 신설 정책·규제에 대한 사전 분석(PIA)과 사후영향평가(PIR)를 모두 운영하여 규제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형태이다. 특히 PIR은 경제에 실질적·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변경에 의무화되며, 사전 영향분석이 충분하지 않거나 미흡(불충분)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PIR이 요구된다(PM&C, 2023c).

분석의 비례성 원칙 적용 면에서 호주는 비례성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을 명시하여 정책 제안의 영향 크기에 따라 분석 깊이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OIA가 이를 사전 조안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PM&C, 2023a). 한국에서는 중요규제와 일반규제 구분이 있으나, 분석 수준의 비례적 차등화 체계는 호주에 비해 정교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규제관리의 접근방법

양국 모두 규제를 일회적 행위가 아닌 지속적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기존 규제의 체계적 정비를 병행한다는 기본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규제개혁의 성과를 매년 공표하는 제도—한국의 규제개혁백서(1998년~), 호주의 영향분석 연례 보고—를 운영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도 유사하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기존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운용하는 점도 공통적이다.

호주의 규제관리는 최근 상대적으로 정책 품질 향상을 지향하는 접근이 더 강하게 나타나다고 볼 수 있다. 2020년대 이후 규제 스튜어드십 모델로의 전환은, 규제를 폐지 대상이 아니라 정기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규제기관 스스로 지속적 개선 책임을 지는 방향을 강조한다(PM&C, 2021). 또한 중앙 통제 방식과 분산형 스튜어드십 방식의 차이도 나타난다. 한국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적 심사와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OIA의 신설 규제 품질 심사와 재정부 규제개혁부서의 기존 규제 개선 기능을 분리하면서, 각 규제기관이 규제기관 성과가이드(RPG)에 따라 스스로 성과를 설정하고 보고하는 분산형 책임 체계를 병행하고 있다(PM&C, 2021). 이는 중앙의 통제 강화를 통해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방식 규제기관 수준의 자율적 책임 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는 호주의 방식 사이의 구조적 차이를 나타내 준다.

2. 제도(Institution) 측면

1) 호주

총리내각실(PM&C)의 경제부서 내에 위치한 영향분석국(OIA)은 신설 규제에 대한 정책영향분석(PIA) 프레임워크 관리를 담당한다. OIA는 기존의 규제영향분석국(OBPR)이 2022년 11월 개칭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일상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규제영향분석 과정 전반에서 부처에 조언·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PM&C, 2023a). OIA는 모든 기관의 규정 준수, 영향분석 활동 및 사후영향평가를 보고하기 위해 공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전임 기관인 OBPR은 다양한 지침 배포와 공무원과의 공식·비공식 교육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을 선도해 왔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OECD, 2021b), OIA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 규제시스템의 개선과 개혁은 재정부(DoF)의 규제개혁부서(Regulatory Reform Division, RRD)가 담당한다. RRD는 소비자·기업의 규제 접근성 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부담 감소, 무역·투자 장벽 완화, 규제 파트너십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재정부 홈페이지). RRD 산하에는 관할권 간 규제개혁, 호주공공서비스(APS) 규제개혁, 규제테크·혁신 등의 기능부서가 있으며, 2022년 신설된 Policy Lab은 규제 관련 정책 연구·분석·개발의 중심으로 기능한다.

기타 관련 조직으로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규제개혁에 대한 직접 권한은 없으나, 호주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규제개혁 관련 자문·연구·홍보를 수행한다(최유성 외, 2013: 248-249 재인용). 연방-주정부 협의체인 COAG(호주정부협의회)는 규제개혁에 있어 연방과 주정부 간 협력·표준화를 추진하며, 시민·기업의 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2) 한국

2026년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편으로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핵심적인 변화는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제고한 것이며,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이원화되어 있던 규제

관리 거버넌스, 기존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별 규제 심사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대통령 주재 회의체가 법적 근거를 갖춘 단일한 체계로 통합되었다.⁷⁾⁸⁾ 국무조정실은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행정조직으로, 산하 규제총괄정책관실(구 규제조정실)이 규제영향분석 지침 수립 및 관리, 규제심사 지원, 규제정보포털 운영, 규제 등록 및 공표 등 규제관리 전반을 실무적으로 담당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부처 내 규제심사 및 자체 규제 관리를 담당한다. 입법부의 규제감독 기능을 지원하는 독립적 기구는 아직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다. 기존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2026년 4월 규제합리화추진단 체제로 새롭게 정비되어 기업 파견 인력과 함께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과제의 발굴을 담당한다(국무조정실, 2026. 4. 30.).

3) 분석요소별 유사점과 차이점

(1) 규제감독기관의 위상과 독립성

양국 모두 규제감독기관을 행정부 최고위 수준에 위치시켜 규제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며, 호주의 OIA는 총리내각실(PM&C) 내에 위치한다. 또한 양국 모두 규제감독기관이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게이트키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심사 주체와 독립성 면에서 보면, 한국의 규제심사 체계는 법령상으로는 부처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1차)와 규제합리화위원회(2차) 심사로 구성된 구조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중요 규제에 대해 직접 심사를 수행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판단이 중심이 된다. 한국의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민간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별도의 법정 위원회로서 관료제로부터

7)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통상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였고, 정부 측에서는 장관이 위원장이더라도 실제 회의에는 국장 또는 실장급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중대한 규제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

8) 한국의 규제감독 체계는 복수의 기관이 규제개혁 기능을 분담하는 다원적 구조로, 기관 간 역할 중복이 발생하거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분산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김신·최진식, 2013: 76). 미국 OIRA, 영국 BRE, 호주 OIA 등이 단일 기관에 규제감독 권한을 집중하는 방식과 대비된다.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설계된 기관이다. 제도적 독립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규제합리화위원회가 OIA에 비해 더 강한 독립성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호주 OIA는 총리내각실 내에 위치하면서도 정부로부터 '일상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영향분석서에 대한 4등급 품질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독립적 게이트키퍼로 기능한다(PM&C, 2023a).⁹⁾ 위원회의 제도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식(한국)과 전문성 중심의 분석 품질관리 방식(호주) 사이의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면에서 양국 간 차이는 '독립성의 유무'보다는 심사 기관의 기능적 성격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 규범적 심의·의결 방식이고, 호주의 분석 품질 평가·조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규제 도입의 적정성을 직접 판단하는 심의·의결 기능을 중심으로 독립성을 설계하였고, 호주는 총리내각실 내 전문부서로서 정책 분석의 기술적 품질을 관리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¹⁰⁾

한편, 양국의 기관 간 역할분담과 조정방식에 차이가 있다. 호주는 신설 규제의 사전 분석 품질 관리(OIA)와 기존 규제시스템의 지속적 개선(RRD)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OIA는 주로 증거 기반의 정책 분석 품질 제고와 APS 정책 역량 향상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의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정책 심의·조정과 신설 규제 심사를 함께 담당하고, 국무조정실은 실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주재 별도 회의체로 이원화되어 있던 구조를 2026년 개편을 통해 단일화한 것이 이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BKL, 2026). 또한 기존의 이원화 구조에서 중대한 규제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이번 개편의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조정 기능의 단일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반면, 호주는 기능별 기관 분리 구조를 유지하면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9) 호주의 OIA는 총리내각실 내 경제(Economic Division)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1급 총괄국장이 책임자이고 비교적 소규모 조직이다(ANAO, 2025). 그러나, OIA는 총리내각실 내에 위치하면서도 정부로부터 일상적 독립성(day-to-day independence)을 유지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10) 호주 감사원(ANAO, 2025)의 감사 보고서도 OIA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구조적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2) 신설규제 심사 기관의 구조와 기능

양국 모두 부처가 규제 제안서와 함께 영향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감독기관이 이를 검토·평가하는 이중 구조를 운용한다. 또한 양국 모두 감독기관이 단순히 심사에 그치지 않고 부처에 대한 지원·교육 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심사 기관의 성격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볼 수 있다. 한국의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서와 자체심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신설·강화 규제의 최종 심의·결정 권한을 행사하며, 개선·철폐를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심사기관이 규제 도입의 가부를 사실상 판단하는 규범적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반면, 호주의 OIA는 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없다. OIA의 역할은 부처와 기관이 상세하고 증거에 기반한 복잡한 정책 문제의 평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코칭하고, 영향분석의 품질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자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OIA는 정책 결정 자체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의 품질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기술적 지원 기관이다. 최종 결정은 의사결정자(장관 또는 내각)가 하며, OIA가 불충분 평가를 내리더라도 부처는 여전히 해당 규제를 의사결정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PM&C, 2023a). 2022~2024년 2년간 OIA는 약 3,800건의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영향분석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97건에 대해 영향분석서 제출이 요구되었으며, 이 중 69건이 최종 평가되어 공표되었다.

한국의 방식은 규제 도입에 대한 외부 견제 기능이 분명한 반면, 심사기관이 정치적 과정에 더 깊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호주의 방식은 정책 분석 품질 향상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목적이어서 규제 도입에 대한 직접적 거부권은 없으나, 기관이 분석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3) 기존 규제 개혁 기관

호주는 재정부의 규제개혁부서(RRD)가 그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은 기존 규제의 개혁과 관련한 규제합리화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다(국무조정실, 2026. 4. 30.). 다만, 조직의 성격과 위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의 합리화추진단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 현장중심 수요자 참여형 추진기구이다. 호주 재정부의 규제개혁부서(RRD)는 상설 행정조직으로 신설 규제 심사(OIA)와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RRD는 규제 스튜어드십 접근 방식 추진, 관할권 간 규제 일관성, 규제기관 성과관리, 레그테크 혁신 등 규제시스템 전

체의 지속적 유지·개선을 담당하며(재정부 홈페이지, 2023), Policy Lab을 통한 규제 연구 기능도 포함한다. 이는 특정 규제 과제의 단기 집중 개선보다 규제시스템의 구조적·장기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호주 RRD의 접근은 각 규제기관이 규제기관 성과 가이드(RPG)에 따라 스스로 성과를 보고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분산된 제도적 책임 구조를 전제로 한다(PM&C, 2021).

3. 규제관리수단(Tool) 측면

1) 호주

2022년 OIA 출범과 함께 기존의 규제영향진술서(RIS)는 정책영향분석(Policy Impact Analysis, PIA)으로 대체되었다. PIA는 7가지 핵심 질문, 즉 정책문제 정의, 정부 개입 필요성, 정책 옵션 검토, 순편익 분석, 이해관계자 협의, 최적 대안 선택, 성과 평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PM&C, 2023a). 분석의 깊이는 비례성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에 따라 정책 제안의 영향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OIA가 제출된 분석에 대해 불충분(Insufficient), 적정함(Adequate), 우수(Good Practice), 모범(Exemplary) 등 4단계 등급 평가를 실시한다(PM&C, 2023a: 15). 규제비용은 행정비용, 실질적 순응비용, 지연비용으로 구분하여 정량화하며, 10년간의 연평균 수치를 규제부담측정표(RBE)에 기록한다(OIA, 2023a).

사후영향평가(Post-Implementation Review, PIR)는 시행된 정책이 의도한 대로 운영되고 원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경제에 실질적·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변경, OIA 최종평가를 거치지 않은 규제 변경, 또는 불충분 평가를 받은 영향분석에 기반한 규제 변경에 대해 PIR이 의무화된다(PM&C, 2023c). 이해관계자 협의는 PIR의 핵심 요소로, 정책의 실제 효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표 2〉 호주: 영향분석(PIA)과 사후규제영향평가(PIR)와의 관계

PIR의 사유	PIR 수행 완료 기한
호주 경제에 대한 상당한 또는 광범위한 영향	5년 이내(아래 2년 이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규제변경에 대한 영향분석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2년
최종결정 전에 OIA의 영향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년
OIA가 평가한 영향분석이 '불충분함' 평가를 받음	2년
영향분석에 대한 총리 면제	2년

자료: PM&C(2023c: 5)

호주는 2003년 입법된 법률에 따라 2005년 이후 제정된 모든 법규를 원칙적으로 제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자동 폐지하는 일몰제를 운용하고 있다(Legislative Instruments Act 2003, 이현정 편, 2024). 동일·유사 규제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재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2018년 개정을 통해 법무장관의 일몰연기 권한 확대, 의회의 일몰연장 가능 등 유연성이 제고되었다(Ramesh, 2018). 일몰제, PIA, PIR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몰 대상 규제의 재입법 시 경미하지 않은 영향이 있으면 영향분석이 요구되고,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년 내 PIR이 의무화된단(PM&C, 2023c).

〈표 3〉 호주: 일몰 유형과 영향분석(PIA)과의 관계

	일몰 유형	영향분석 요구
1	일몰(연기 또는 일몰 변경에 의해 일몰 날짜가 변경된 경우 포함)	영향 분석이 필요하지 않음
2	일몰 면제를 승인	영향 분석이 필요하지 않음
3	OIA가 재입법될 규정이 기업, 지역사회 기관 또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함	영향 분석이 필요하지 않음
4	OIA는 재입법할 규정이 기업, 지역사회 조직 또는 개인에게 경미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함. 다만, 기존 규정은 큰 변경 없이 다시 만들어지는 경우	협의 후, 기관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을 평가하고, 영향분석 프로세스 대신 서면으로 이를 인증할 수 있음
5	재입법될 규정이 경미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규정도 상당한 변화로 다시 만들어지는 경우	영향분석은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OIA와 함께 최종 결정되어야 함
6	규정이 만료되거나 중단됨(하지만 일몰되지는	규정이 경미하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 영

	일몰 유형	영향분석 요구
	없음). 기관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향 분석이 필요함

자료: PM&C(2023b: 3) 및 이현정 편(2024: 132)에서 수정

2021년 도입된 규제기관 성과가이드(Regulator Performance Guide, RPG)는 기존 6개 KPI 기반의 규제기관 성과프레임워크(RPF)를 대체하여, 모범관행 3원칙인 지속적 개선 및 신뢰 구축, 위험 기반·데이터 기반 규제, 협업 및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PM&C, 2021). 각 규제기관은 장관의 기대진술서(SOE)에 따라 목적진술서(SOI)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회기 말에 연례 성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성과관리 시스템은 공공거버넌스·성과·책임법(PGPA)과 연계되어 의회 및 감사원의 감시를 받는 구조이다.

2) 한국

현행 규제영향분석서는 3개 항목 8개 요소로 구성된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라 도입 대상 규제에 대한 정량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되, 예외적으로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분야 법률·하위법령 모두 최상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규제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비용·편익을 형식적으로 산정하는 분석서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최성락·이혜영, 2020),

규제일몰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두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최근 정부는 신설·강화되는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키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키한 도래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 폐지·개선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일몰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규제 사후영향평가는 제도화 및 공식화 수준이 낮으며, 재검토키한 도래 시 규제영향분석을 재 실시하는 방식과 각 부처의 자체 정비를 통한 부분적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로, 최근 KDI 등에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양용현 외, 2023).

규제샌드박스는 금융분야 뿐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규제비용감축제, 기존규제 자체정비, 규제등록·공표제도, 규제정비종합계획 등이 규제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세부요소별 유사점 및 차이점

(1) 규제영향분석(RIA / PIA)

양국 모두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다. 분석의 핵심 요소로 정책문제 정의, 정부 개입의 필요성, 규제 대안 검토, 비용·편익 분석,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포함하는 점도 공통적이다. 또한 양국 모두 경미하거나 기계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분석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공표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을 공유한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분석 대상의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신설·강화 규제에 한정되며, 분석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호주의 PIA는 연방정부 부처뿐 아니라 산하기관·공공기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 제안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 2년간 OIA가 약 3,800건의 예비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의 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분석서의 구조와 항목이 다르다. 한국은 3개 항목·8개 요소로 구성되며 호주의 PIA는 7가지 핵심 질문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데, IAs는 협의 통합, 사후평가 계획까지 포함한다. 셋째, 품질 평가와 공개 방식이 다르다. 호주 OIA는 제출된 영향분석서에 대해 4등급으로 품질을 공개 평가하며, 불충분 판정을 받으면 2년 내 사후영향평가가 의무화된대(PM&C, 2023a)는 점에 차이가 있다. 넷째, 비례성 원칙의 적용 측면에서 호주는 정책 제안의 영향 크기에 따라 분석의 깊이를 체계적으로 달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OIA가 예비평가 단계에서 이를 사전 조언한다(PM&C, 2023a). 한국에도 중요규제와 일반규제의 구분이 있으나, 분석 수준의 비례적 차등화 체계는 호주에 비해 덜 정교화되어 있다.

(2) 규제일몰제

양국 모두 신설 규제에 대해 법률 차원에서 일몰 조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한 도래 시 규제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의 자동적 정리를 통해 규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제도적 취지를 공유한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적용 대상 면에서 한국의 일몰제는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는 행정규제에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5년 이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활동·일자리 관련 모든 신설·강화 규제에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25). 반면, 호주의 일몰제는 훨씬 광범위하다. 2005년 이후 제정된 모든 입법수단은 별도의 면제 결정이 없는 한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자동 폐지된다(Attorney-General's Department, 2020). 법규 명령에 해당하는 입법수단 전체가 원칙적 대상이다. 한국의 일몰제가 행정규제를 신설할 때 기한을 부가하는 방식인 반면, 호주는 기존 입법수단 전체에 대해 10년 단위의 자동 소멸을 원칙으로 하는 더 구조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입법수단 차원의 일몰은 행정부 제정과 의회 제정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이러한 공백이 상대적으로 작다.

둘째, 재입법 시 영향분석 연계 측면에서 호주는 일몰·PIA·PIR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몰 대상 규정이 경미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내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영향분석(IA)이 필요하며, 영향분석 없이 재입법한 경우 2년 내 사후영향평가(PIR)가 의무화된다(PM&C, 2023c). 한국에서는 재검토기한 도래 시 규제영향분석을 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세 제도의 유기적 연계 구조는 아직 호주만큼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면제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호주는 법무장관이 7가지 정책 기준에 따라 일몰 면제를 심사하며 이를 공개한다(Attorney-General's Department, 2020). 한국에서는 존속기한 설정 예외 사유가 비교적 넓게 인정되고 있어 일몰제의 실질적 작동 범위가 제한된다는 평가가 있다.

(3) 사후규제영향평가

양국 모두 시행된 규제의 실제 효과를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방향성은 유사하다. 또한 양국

모두 사전 규제영향분석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후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기능을 상정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제도화의 수준이다. 호주의 PIR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발전해 온 독립된 법적 제도로, 경제에 실질적·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 OIA 최종 평가 없이 진행된 규제 변경, 불충분 평가를 받은 규제 변경에 대해 의무화되어 있다 (PM&C, 2023c). OIA와 호주평가센터(ACE)가 협력하여 PIR을 관리한다. 한국은 2026년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사후평가 결과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독립적인 평가 체계, 전담 평가기관의 역할, 평가 결과 공개 방식, OIA와 같은 전문 감독기관의 품질 검토 기능 등 운용 세부 체계는 아직 형성 중에 있다. 규제영향분석(사전)과의 유기적 연계, 의무 대상 규제의 선정 기준, 독립적 평가 역량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양용현 외, 2023).

(4) 기타 규제관리수단

규제기관 성과가이드(Regulator Performance Guide, RPG)는 호주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제도이다. 이는 신설 규제 심사(PIA)나 기존 규제 폐지(일몰)와는 별도로, 현재 작동 중인 규제기관의 규제 집행 방식과 성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다. RPG가 각 규제기관의 규제 문화와 역량을 자율 책임 구조 하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스튜어디십 접근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은, 규제 집행의 질적 관리 차원에서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

양국 모두 신설 규제의 비용을 기존 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상쇄하는 비용총량 관리 방식을 운용하거나 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규제비용관리제를 주요 규제 관리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호주는 2013~2015년 규제비용상쇄제도(Offset Rule)를 기계적으로 의무화하다가 중단하였으며 2020년 완화된 방식으로 재도입하였다. 현재는 규제부담측정표(RBE)에 비용 증가분을 기재하고 상쇄 방안을 '권고' 수준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의무적 상쇄 방식을 유지하는 한국보다 비구속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OIA, 2023a).

양국 모두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기존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호주의 규제샌드박스는 금융부문(핀테크)에 한정되어 ASIC이 담당하고 있어 적용 분야가 한국보다 좁다(이혜영, 2023). 반면 한국에서는 샌드박스 이후 관련 법령의 후속 정비가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샌드박스 운용 범위는 좁지만 규제테크(RegTech) 혁신을 통한 규제 준용비용 감축 접근을 별도로 추진하는 점이 구별된다.

4. 과정(Process) 측면

1) 호주

호주의 PIA 절차는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영향분석서 작성, OIA 2단계(two-pass) 평가, 공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PM&C, 2023a). 부처는 가능한 한 빨리 예비평가를 시작하여 OIA에 제출하면 OIA가 5영업일 내에 영향분석 필요 여부와 분석 수준을 회신한다. 1단계 평가에서 OIA는 요건 충족 여부와 분석 방향을 조언하고, 부처는 이를 반영하여 최종 제출하면 2단계에서 기관장 인증서와 함께 최종평가가 이루어진다. 최종 결정 발표 후 영향분석서는 OIA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투명성을 확보한다.

호주 정부는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핵심 요소로 중시하며, 전체 공개 협의, 타게팅된 협의, 은밀한 협의, 사후결정 협의 등 다양한 협의 유형을 상황에 맞게 선택·적용한다(PM&C, 2023a: 35). OECD는 2021년 규제정책 전망에서 호주가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의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평가하였다(OECD, 2021a). 최근 호주 정부는 소기업 참여 원칙을 별도로 수립하고 모범사례 협의 지침을 개선하였다.

〈표 4〉 호주: 이해관계자 협의 유형

유형	내용
전체 공개 협의	이것이 기본 접근 방식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일 때, 결정 과정의 완전성이 분명할 때 활용
타게팅된 협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그룹이 지리적 지역이나 사업 부문이 소규모이거나 잘 정의하고 있을 경우 활용

유형	내용
은밀한 협의	문제의 민감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정이나 기업에서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혼란(우려, 분노 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대중의 감정을 파악하거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신중하게 알려야 할 경우 활용
사후결정 협의	결정이 시장에 매우 민감하고 일부는 상담을 받아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음, 문제가 이미 중요하고, 공개 토론과 협의를 이끌어냈을 때 유용한 정책 목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공개적인 공개 협의가 내각 심의의 기밀성이나 훌륭한 의사 결정을 손상시킬 수 있음

자료: PM&C(2023a: 35)에서 수정

호주의 영향분석은 비용편익분석, 위험도 분석, 분배적 영향 분석, 소기업 영향 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OIA, 2023b; 2023c; 2023d; 2023e). 특히 비용편익분석은 단순한 재정적 효과를 넘어 지역사회와 경제 전반에 대한 모든 효과를 고려하며, 위험도 분석에서는 가능한 한 위험을 정량화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처한다. 규제부담 측정 프레임워크(RBM)는 행정비용, 실질적 순응비용, 지연비용을 구분하여 규제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2) 한국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는 크게 부처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규제합리화위원회(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규제 도입 전 부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 중 분석서를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제출된 의견은 분석서에 반영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자체심사를 거친 규제영향분석서와 자체심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신설·강화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철회를 권고한다. 2024년 기준 총 95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개선 및 철회 권고 조치를 단행하였다. 다만 의원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규제나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 안건은 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제심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강화 시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을 통해 행정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서의 핵심 요소인 '이해관계자 협의' 항목에 주요 의견의 반영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

정보포털을 구축하여 규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는 신설·강화 규제 도입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 2배의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용 측정의 정확성 및 상쇄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민호 외, 2021). 비용·편익 분석에 있어 정량적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정성적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분석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영향 분석, 경쟁 제한 효과 분석, 기술규정·적합성평가의 기업 영향 분석 등이 포함된다. OECD는 2024년 평가에서 한국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려 할 때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할인율 적용, 분석 기간 설정, 간접효과 측정 등 방법론적 표준화는 여전히 발전 중이며, 위험도 분석, 분배적 영향 분석, 소기업 특별 분석 등 호주의 다층적 분석 체계와 비교하면 내용적 깊이 측면에서 심화가 필요하다.

3) 분석요소별 유사점과 차이점

(1)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과정

양국 모두 규제 제안 부처가 영향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외부 감독기관이 이를 검토하는 이중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규제영향분석이 정책 결정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원칙, 분석 결과의 공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 조항의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절차의 단계 구조와 개입 시점 면에서 볼 때, 호주의 경우 예비평가 단계에서 OIA는 영향분석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요구되는 분석의 깊이에 대해 조언하며, 이후 부처는 7가지 영향분석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영향분석서를 작성한다. OIA는 선택적인 조기평가와 의무적인 최종평가를 제공한다. 특히 최종평가의 2단계(two-pass) 구조가 두드러지는데, 호주 OIA는 정책 도입의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분석 품질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역할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직접 심의·의결하는 한국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기능적 성격이 다르다.

호주 OIA는 예비평가 단계부터 부처와 비공식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과정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코칭' 역할을 수행하는(OIA, 2023) 반면, 한국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최종 제출된 분석서를 심사하는 사후적 검토 방식이 중심이며, 체계적인 사전 조언·코칭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최종 정책결정 발표 시 영향분석서와 함께 OIA의 품질평가 서한, 인증서가 OIA 홈페이지에 함께 공표되어 의사결정의 분석적 근거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PM&C, 2023a).

(2) 이해관계자 협의

양국 모두 규제 신설·강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를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영향분석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입법예고나 공개 게시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운영하며,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피드백 루프를 제도화하고 있다.

다만, 규제영향분석 내 협의의 위상 면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호주의 경우 사전 최종 결정 이전에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정책 입안자들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협의가 없었다면 영향분석서는 불충분(insufficient)으로 평가된다. 즉, 협의의 부재는 분석서 전체가 불충분 판정을 받는 사유가 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협의 항목 기재 누락이 분석서 전체의 효력에 직결되는 강제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협의의 시점과 조기 개입 원칙에서 차이가 있다. 호주는 OIA가 정책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협의 수준에 대해 조언할 것을 강조하며, 협의 대상자들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협의 기간이 길수록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경청(real listening)'을 목표로 한 효과적인 협의가 정부의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입법예고 기간은 주로 법령안이 구체화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기 단계 협의의 성격이 강하며, 정책 옵션 탐색 단계에서의 조기 협의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입법예고가 의도한 의견수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 요건화 되는 경향이 있다.

협의 유형의 다양성 면에서 호주는 전체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 타겟팅된 협의(targeted consultation), 은밀한 협의(covert consultation), 사후결정 협의(post-decision consultation) 등 유형별 적용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며, 소기업 협의를 위한 별도 원칙도 운영한다(OIA, 2023e). 한국의 협의 방식은 공청회·행정상 입법예

고·전자공청회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황별 협의 유형의 선택 기준이나 소기업 특화 협의 원칙 등 세분화된 운용 기준은 제도적으로 덜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협의 결과의 분석서 반영 검증 측면에서 OIA는 협의 중에 제시된 정책 대안 옵션들이 영향분석서에 포함되거나 논의되었는지를 점검하는데, 이는 협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옵션의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분석서의 품질 평가를 통해 확인하는 구조이다. 한국에서도 의견 처리결과 통지 의무가 있으나, 협의에서 제시된 대안이 규제영향분석서의 정책 대안 검토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메커니즘은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3) 기타 분석과정

양국 모두 규제영향분석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핵심 분석방법으로 채택하며, 정량적 분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경우 정성적 분석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분석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관행을 공유하며(KDI 규제연구실, OIA, 2023a), 규제 비용을 행정비용과 실질적 순응비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비용편익분석의 방법론적 표준화 수준 면에서 차이를 볼 수 있으며,¹¹⁾ 위험도 분석의 체계화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¹²⁾ 또한 행정비용 측정의 운용 방식과 경쟁영향 분석에도 차이가 나타난다.¹³⁾¹⁴⁾ 분배적 영향 분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호주는 분배적 영향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며, 이해관계자별 비용·편익 배분, 취약계

11) 호주 OIA는 비용편익분석 가이드, 위험도 분석 가이드, 분배적 영향 분석 가이드, 소기업 분석 가이드, 표준비용 모델 가이드, 경쟁 영향 가이드(OIA) 등 주제별 세분화된 방법론 지침을 별도로 발간하고 있다.

12) 호주 OIA는 위험도 분석을 영향분석의 필수 요소로 명시하고, 가능한 한 위험을 정량화하도록 권장하며, 정량적 증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가 패널, 위험 분류 매트릭스, 비교 분석 등을 활용한 질적 논의를 통해 영향분석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OIA, 2023c).

13) 한국은 2007년부터 표준비용모델(SCM) 기반의 행정비용 측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KDI 규제연구실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처별 측정 수준의 편차가 크고 측정 결과의 체계적 공표와 총량 관리 목표 설정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민호 외, 2021). 호주의 규제부담측정프레임워크(RBM)는 행정비용, 실질적 순응비용, 지연비용으로 구분된 규제비용 측정 기준을 제시하며, 모든 내각 제안에 대해 비용을 정량화하고 규제부담측정표(RBE)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4) 호주 OIA는 경쟁과 규제에 관한 별도 가이드노트를 운영하며,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 별도의 심층 분석을 요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층 영향, 집단 간 상충관계 등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다(OIA, 2023d). 한국의 경우 분배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방법론은 명문화된 지침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5.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3장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호주와 한국의 규제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분석요소별 유사점과 차이점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규제관리 시스템 개선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규제관리시스템 비교분석 결과

구분	분석요소	호주	한국	시사점
I. 정책	규제 개념·범위	실질 영향 기준(광의): 행동 변화 초래하는 모든 정책 행위 포함, 97개 기관 포괄	법령 형식 기준(협의): 법령에 규정된 사항, 중앙행정기관 중심	비공식 규제수단 관리 사각지대 해소 검토
	규제영향 분석 대상	신설(PIA)·사후(PIR) 전 주기 관리, 비례성 원칙·OIA 사전적 품질관리 강조	신설·강화 규제 한정, 의원입법 제외, 분석 수준 차등화가 정교하지는 않음	규제의 생애주기 관리 체계 전환이 필요함
	규제관리 접근방식	규제 스튜어디십: 자율적 책임의 분산형 체계, OIA·RRD 기능 분리	규제합리화위원회 중심 집권적 관리, 가시적 성과 창출 중심	중앙집중 추진력 유지하면서 규제기관 자율 책임 문화 병행
II. 제도	규제감독 기구 위상·독립성	OIA(PM&C 내 전문부서): 일상적 독립성 유지, 분석 품질 관리 중심, 구조적 독립성 한계	규제합리화위원회(대통령 소속): 민간위원 과반, 심의·의결 권한 보유, 제도적 독립성 확보	제도적 독립성(한국)과 분석 전문성(호주)의 장단점 상호 보완 검토
	신설 규제 심사기관	OIA: 4등급 품질평가 공개, 사전 코칭 강조, 도입 결정권 없음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의결·권고 기능, 사전 코칭 기능 상대적으로 약함	사전적 관리 제도화, 품질평가 공개 도입으로 분석 인센티브 구조화 필요
	기존 규제 정비기관	RRD(상설): 규제시스템 장기 유지·개선, Policy Lab 운영	규제합리화추진단(2026~): 민관합동, 현장 중심 수요자 참여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III. 관리 수단	규제영향 분석	7개 핵심 질문, 비례성 원칙, 4등급 품질평가 공개, 불충분 시 PIR 의무화	3항목 8요소, 품질 등급 공개 없음, 신설·강화 한정	품질평가 공개 도입으로 부처 분석 투자 인센티브 구조화

구분	분석요소	호주	한국	시사점
	규제일물제	모든 입법수단 10년 자동 폐지, 재입법 시 PIA·PIR 연계 의무	신설·강화 규제에 재검토기한 설정, 의원입법 사각지대	RIA·일물제·사후평가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 필요
	사후규제 영향평가	PIR: 독립 법적 제도, 의무 대상 기준 명확, OIA·ACE 협력 관리	2026년 법적 근거 신설, 운용 체계 형성 초기 단계	의무 대상 기준·평가 역량·RIA 연계 구조 사전 설계 필요
	기타 수단	RPG: 97개 기관 성과 자율 보고, RegTech 혁신, 비용 관리제 완화	규제비용관리제, 규제샌드박스(전 산업)	규제기관 성과관리(RPG형) 도입 검토, 샌드박스 후속 정비
IV. 과정	규제심사·영향분석 절차	예비평가, 작성, 조기평가(선택), 최종 2단계 평가, 공포, OIA 전 과정 코칭	자체심사, 입법예고, 위원회 심사, 사후 심사 중심	사전적 관리 제도화, 품질관리 강화
	이해관계자 협의	4가지 협의 유형 명시, 협의 미실시 시 불충분 판정, 소기업 특화 원칙 제공	입법예고 중심(후기), 초기 단계 협의 미흡, 형식적 절차화 경향	정책 형성 초기 협의 제도화, 협의 반영 검증 메커니즘 강화
	분석방법론	CBA·위험도·분배적·소기업·경쟁 영향 분석 별도 가이드 체계화	CBA 중심, 위험도·분배적·소기업 분석 지침 상대적 부족	위험도·분배적 영향 분석 지침 체계화 등

이상의 비교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규제의 개념을 법령 형식 중심에서 실질적 영향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지도·권고·가이드라인 등 비공식적 정부 개입이 실질적으로 민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관리 체계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은, 규제의 실질적 부담을 보다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다. 또한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다. 행정부의 규제심사 체계에서 제외되는 의원입법 규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국회 차원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는 규제관리 체계의 포괄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규제감독기관의 분석 품질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정치적 권위가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심사 전 단계에서 부처가 양질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코칭 기능을 병행 제도화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나아가 영향분석서에 대한 품질 등급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는 부처의 분석 투자 인센티브를 구조화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셋째, 규제영향분석, 일몰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나의 유기적 생애주기 관리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후규제영향평가는 재검토기한 도래 시 자동으로 연동되고, 불충분한 사전 분석에 대한 의무적 보완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세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개별 제도의 실효성이 상호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이해관계자 협의를 후기 단계의 형식적 절차에서 정책 형성 초기 단계의 실질적 참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가 정책 대안의 형성 과정 자체에 기여하고 그 반영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메커니즘을 갖출 때, 규제의 수용성과 정당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소기업을 위한 특화 협의 원칙을 도입하여 협의의 실질적 포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제관리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규제기관 수준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호주의 규제기관 성과가이드(RPG)와 같이 각 규제기관이 규제집행 방식과 성과 문화를 스스로 점검하고 연간 성과를 보고하는 체계는, 규제관리를 중앙의 통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규제기관 내부의 자율적 책임 문화로 내재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는 정치적 모멘텀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규제개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규제관리시스템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정책(policy), 제도(institution), 관리수단(tool), 과정(process)를 중심으로 호주와 한국의 규제관리시스템을 13개 세부 항목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일몰제 운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화 등 핵심 제도의 구비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규제의 개념 범위, 기관 설계 방식, 수단 간 연계 구조, 이해관계자 협의 수준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규제의 개념 측면에서 호주는 실질적 영향 기준의

광의적 개념을 채택하여 정책 제안 전반을 규율하는 반면, 한국은 법령에 근거한 협의적 개념에 머물러 있어 규제영향분석의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 제도 측면에서 한국의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민간위원 과반의 법정 독립위원회로서 제도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 호주의 OIA는 작은 규모의 전문부서로서 분석 품질 관리에 강점을 보인다. 수단 측면에서 호주는 PIA·PIR·일몰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규제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반면, 한국은 제도 간 연계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과정 측면에서 호주는 비례성 원칙에 기반한 2단계 평가와 다양한 협의 유형의 제도화를 통해 규제 형성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의 규제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의 개념을 법령 형식 중심에서 실질적 영향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품질 등급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부처의 분석 투자 인센티브를 구조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영향분석, 일몰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나의 유기적 생애주기 관리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 넷째, 이해관계자 협의를 정책 형성 초기 단계의 실질적 참여로 전환하고, 협의 결과가 정책 대안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검증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규제관리시스템의 재정비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호주 제도와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시스템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개 자료 및 문헌에 기반한 분석으로 인해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 규제비용 변화 등 계량적 성과를 직접 비교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양국의 규제관리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2026).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서울: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2026. 4. 30). 현장 중심 참여형 규제합리화 본격화: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2026년 4월 30일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24).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브리핑 (2024.11.24.). 서울: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2025). 『2024 규제개혁백서』. 서울: 국무조정실.
-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
- KDI 규제연구실. (2023).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 및 방법론 안내.
- 김성준. (2015).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진화: 골프장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9(4): 117-138.
- 김신·최진식. (2013).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을 통한 OECD 주요 선진국과의 규제관리체계 비교연구: 미국, 영국,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7(1), 55-88.
- BKL. (2026.4.20.).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주요 내용과 시사점. Legal Update.
- 양용현·이현정 외. (2023).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주요국 사례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양용현 외. (2023).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민호 외. (2021). 『규제비용관리제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59-01. 한국행정연구원.
- 이영범·최무현. (2006). OECD 국가의 규제개혁기구 비교연구: 조직유형과 기능적 하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8(2), 585-607.
- 이현정 편. (2024). 『규제체계와 규제영향분석의 주요국 제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
- 이혜영. (2023).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특성 분석과 시사점: 산업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32(1), 37-70.
- 최유성 외. (2013). 『주요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최성락·이혜영. (2012). 규제관리시스템 비교연구: 영국·호주·미국·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성락·이혜영. (2020). 규제영향분석서 비용편익분석 부문의 실태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29(1), 3~34
- ANAO. (2025). Administration of the Impact Analysis Framework.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 Attorney-General's Department. (2020). Guide to managing the sunseting of legislative instruments. Canberra.
- Australian Government. (2022). Deregulation Agenda Report Card.
- Breyer, S. G. (1982). Generic Approaches to Regulatory Reform, Regulation and Its Refor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 D. (2014). Defining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ERIA & NZIER.
- Jacobs, S. H. (2007). Current trends in the process and methods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Maintaining RIA into policy process. In Kirkpatrick & Parker (Eds.),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New York: Edward Elgar Publishing.
- Jacobzone et al. (2007). 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 Kerwin, C. M. (1994). Rule Making.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Kohlmeier, L. (1969). *The Regulators: Working Agencies and the Public Interests*. New York: Harper & Row.
- Mahoney, J. & Thelen, K. (Eds.) (2010).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06). Background Document on Regulatory Reform in OECD Countrie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07). 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09). Simple, Effective, Transparent Regulation: Best Practices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0).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Government Capacity to Assure High-Quality Regulation in Australia.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1a).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1b). Learning from Australia's Oversigh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Paris: OECD (March 10, 2021).
- OIA. (2025). About the Office of Impact Analysis. <https://oia.pmc.gov.au/about>.
- OIA. (2023). Best Practice Consultation Guidance Note. PM&C, Australian Government.
- OIA. (2023a). Regulatory Burden Measurement Framework (July). PM&C, Australian Government.
- OIA. (2023b). Cost Benefit Analysis Guide Note. PM&C, Australian Government.
- OIA. (2023c). Risk Analysis in Impact Analysis. PM&C, Australian Government.
- OIA. (2023d). Distributional Analysis. PM&C, Australian Government.
- OIA. (2023e). Small Business. PM&C, Australian Government.
- OIA User Guide (2023). User Guide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Guide to Policy Impact Analysis. PM&C, Australian Government.
- Page, E. C. (1995). Comparative Public Administration in Britain. *Public Administration*, 73(2), 123-14
- PM&C (2021). Regulator Performance Guide. Canberra: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 PM&C. (2023a). Australian Government Guide to Policy Impact Analysis. Canberra: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 PM&C. (2023b). Sunsetting Legislative Instruments (July).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Australian Government.
- PM&C. (2023c). Post-implementation reviews (May).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Australian Government.
- Przeworski, A. & Teune, H. (1970).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New York: Wiley-Interscience.

Ramesh, K. (2018). Legislation Amendment (Sunsetting Review and Other Measures) Bill 2018. Bills Digest, No. 11, 2018-2019. Parliament of Australia
https://www.theglobaleconomy.com/rankings/wb_regulatory_qual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 Korea and Australia: Implications for Korea

Hye Young Lee

This study systematically compares and analyzes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of Australia and South Korea based on the four core components of regulatory governa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two countries share considerable similarities in terms of key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cluding mandatory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the operation of sunset clauses, and legally mandated stakeholder consultation.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are identified in the scope of regulatory concepts, institutional design, the integration of regulatory tools, and the level of stakeholder engagement. With respect to the concept of regulation, Australia adopts a broad, impact-based definition that encompasses a wide range of government policy proposals, whereas South Korea maintains a relatively narrow legalistic definition. Regarding regulatory processes, Australia has established a well-developed two-tier assessment framework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gether with diversified and institutionalized stakeholder consultation mechanisms. In terms of regulatory tools, Australia effectively integrates Impact Analysis, Post-Implementation Review, and sunset clauses into a coherent regulatory lifecycle management framework. In contrast, South

Korea's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exhibits relatively weaker linkages among these regulatory instruments.

Key Words: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fice of Impact Analysis (OIA), Regulatory Management Tools, Regulatory Reform